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18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18. 2.

우수장학부



목 차

I. 개요	1
II. 주요 사업내용	2
III. 신규장학생 선발	4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12
V. 기타	23
VI. 2018년도 추진일정	28
참고 1.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30
2. 신규장학생 지원 서류(서식)	31
3. 계속장학생 관련 서류(서식)	37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43
5. 신청인 동의서	47

'18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8년도	2018년도
선발시기 조정	○ 신규장학생(국내) 선정시기: 5월	○ 신규장학생(국내) 선정시기: 4월
소외계층 추천강화	○ 영재 학교 · 과학고 지역추천 제외	○ 영재 학교 · 과학고 지역추천 포함(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소외계층 지원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18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지원
전과제한 폐지	○ 이공계열 내 전과 1회 허용	○ 이공계열 내 전과횟수 제한 폐지
환수 심의기능 활성화	○ 환수위원회 심의기능 제한적 활용	○ 환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I 개요

1. 목적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2. 추진경과

- 2003. 1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7월)의 일환으로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신설
 - ※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금,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금
- 2008. 1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07.7월)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우수학생 지원사업(이공계)’ 신설
- 2008. 1월: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과학재단)
 -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사업
- 2009. 5월: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장학재단)
 -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2013. 3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3. 사업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관장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 시·도 교육청: 해당 지역 우수인재 심사 및 추천 등 수행

II

주요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지원인원 및 예산: 527명 내외, 총 59억 원

구 분		예 산	인 원
신규 장학생	국내	14억 원	120명 내외
	지역추천	2억 원	18명 이내
	해외	6억 원	10명 이내
계속장학생		37억 원	380명 내외
합 계		59억 원	527명 내외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최대 8학기)
 -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수혜 가능횟수는 8회로 제한
 -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가능)
 -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기수혜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 포함

- 학·석사 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 ※ 단, 해외장학생의 경우 해외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부과정 졸업 시 학·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이 가능한 하는 경우 총 4년의 범위 내(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5년)에서 지원가능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 불인정

□ 지원 금액

- 국내장학생
 - 등록금: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 단, 당해연도 신규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학업장려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 단, 당해연도 신규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 단, 당해연도 신규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대학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장학생은 추천(2차) 마감일 기준 1개월 내에 증빙자료 제출
 - * 생활비 수혜가 가능한 자는 계속장학생 대학추천(2차) 마감일 내에 수급권을 득한 자료 한함
 - ** 대학추천(2차) 마감일 기준 1개월 전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득한 일자가 마감일 이전임을 증빙해야함)
- 해외장학생: 연간 최대 미화 5만\$ 이내(학비, 체재비)
 - 학비: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 체재비: 연간 최대 미화 2만\$ 까지 정액 지급(국가, 도시에 따른 차등 지급)
 - ※ 연간 학비 우선 지원 후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체재비 지원
 -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를 참고하여 공무원 체재비의 90%내외 지급

< 체재비 적용 예시(국가별 최저비용 도시 기준) >

(단위: USD)

국가	A	B=A*90%	C=B*85%	D=C*12	적용금액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 댈러스)	2,179	1,961	1,667	20,003	20,000
영국	2,600	2,340	1,989	23,868	20,000
중국(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다롄)	2,268	2,041	1,735	20,820	20,000
일본(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2,525	2,273	1,932	23,180	20,000

* A: 7급 공무원 재외 근무수당, B: 7급 공무원의 90%, C: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85%, D: 연간 지급액

** 일부 국가 별 현지화를 USD로 환산(18. 1월말)하여 적용한 금액(지급 당시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출국항공료: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별도 1회 실비 지원(이코노미, 편도 기준)

※ 왕복항공료 증빙자료 제출 시 왕복항공료 금액의 반액 지원

III 신규 장학생 선발

1. 선발규모 및 신청자격

선발규모: 147명(국내 120명, 지역추천 17명, 해외 10명) 내외

신청자격

○ 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8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학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 체계 및 '18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 입학)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 전공으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급 장학금 전액 반환
- 등록금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 대학생),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 등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 (단, 등록금 학생부담분 및 학업장려비, 생활비만 지원)
- '17년도 대학 구조개혁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D·E등급(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선발 제한)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기준일: '17.9.4.)
 - ※ 단,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완전해제' 및 '일부해제' 조치를 받은 대학은 선발 가능('16.9.5. 확정·발표)
- 성적 기준
 -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3학년 3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교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 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고교 유형	기 준		
		성적	과목 수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이상	또는*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10과목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A ⁻ 학점 이상	10과목이상	

- * 고교 1학년~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 교과목의 성적 기준 총 과목수가 10과목 이상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함
-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 교육부 비 인가학교는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성적 입력, 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적용 교과 및 과목(수학·과학 교과)

- 일반고 및 과학고: 수학·과학 교과 과목 및 이와 관련된 과목

교과명	과목명
수학	공통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이산수학, 실용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미적분 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확률과 통계, 수학의 활용,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등
과학	공통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등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컴퓨터과학 I, 컴퓨터과학 II, 전자과학, 환경과학, 과학사,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현대과학과기술, 과학철학, 정보과학 I, 정보과학 II, 과제연구 I, 과제연구 II, 원서강독, 워크숍 등

※ 재량교과 중 상기 과목명과 동일한 교과의 경우 포함

※ 상기 과목이외에 고교 재량교과 및 기타로 분류된 수학·과학 관련 과목 인정

- 영재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 필수/심화/선택/특강 과목

-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 舊 대학과목선 이수제),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성적 인정

※ UP 등 과목 성적 기준: A 이상 (성적확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 기준 다름(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인정 안 됨

※ 단, 석차등급이 'Pass/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

○ 유형별 신청자격

- 국내·해외 장학생: 공통 신청 자격 충족 자

- 지역추천제: 공통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시도 교육감은 추천 기준에 따라 관할지역의 졸업생*(영재학교·과학고 제외) 중에서 동 지역 내의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자를 추천(각 5명)

* 단,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는 추천 가능

※ 지역추천제 제외 대학: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7인을 최종 선발 (서류심사는 면제하고 심층면접만 실시)

○ 3개 유형(국내, 지역추천제, 해외)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2. 선발기준

□ 신청 분야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를 신청

※ 본인 분야와 무관한 분야를 신청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연관된 분야 신청

□ 선발 기준 및 방법

- 선발기준: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 학업계획, 향후 사회 환원 계획 등

- 선발방법: 서류심사(1단계) → 인·적성 검사* → 심층면접(2단계)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미응시 시 탈락처리(심층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유형별 심사내용

- 국내(일반): 지원분야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 지원분야별 최종선발 인원은 분야별 신청비율에 따라 산정

- 국내(지역추천): 지역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 상위 우수자 1명 선발

※ 미추천 지역 발생 시 상대평가를 통해 전체 추천자 중 상위 우수자 선발

※ 미선정자 중 상대평가를 통해 상위 우수자 34명은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로 선발

- 해외: 전체 지원 분야에 대하여 상대평가 실시하여 상위 우수자 선발
(단, 지원 분야별 최소 1명 선발)

※ 미신청 분야 발생 시 상대평가를 통해 전체 대상자 중 상위 우수자 선발

□ 단계별 심사내용: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

- 서류심사(1단계)를 통해 심층면접(2단계) 대상자를 선발하며, 심층면접 대상자 선발규모는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 심층면접 대상자 중 종합점수(서류심사, 심층면접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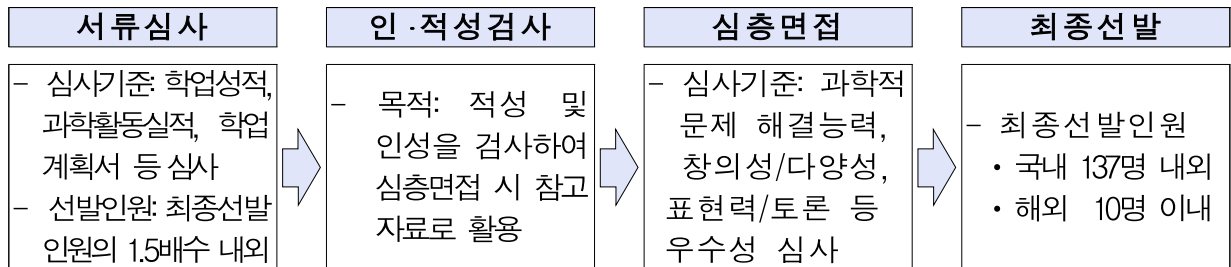
구분	서류심사(1단계)				심층면접 (2단계)	최종선발 (1,2단계 합산)
	학업 성적	과학활동 실적	학업 계획	계		
배점	30점	40점	30점	100 점	100 점	200점
국내 장학생	일반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좌동	120명 내외
	지역추천제	서류심사 면제			85명 이내	17명 이내
해외장학생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좌동	10명 이내	

※ 동점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심층면접심사 ‘인적성 등’ 항목 점수 상위자(2순위), 혁신성장동력 4대 분야(13개)* 전공자(3순위), 서류 심사 성적 우수자(4순위), 심층면접심사 성적 우수자(5순위) 우선선발

* 혁신성장동력 4대 분야('17.12.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 지능인프라: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 스마트이동체: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무인기)
- 융합서비스: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 산업기반: ⑩ 지능형 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 선발절차



3. 세부 선발기준

□ 서류심사 평가기준

○ 학업성적(30점)

- 신청자격 충족자에 대해 신청분야별로 이수단위 합계가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배점을 부여

· 평가배점

평가배점	30점	29점	28점	27점	26점	25점	24점	23점
적용비율	상위30%까지	30%초과~40%까지	40%초과~50%까지	50%초과~60%까지	60%초과~70%까지	70%초과~80%까지	80%초과~90%까지	90%초과

- ※ 고교유형·졸업유형별(정규 또는 조기졸업)로 각각 구분하여 신청 시 입력된 이수단위 합계 기준으로 평가
-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학교 기준으로 평가

○ 과학활동실적(40점)

- 지원자가 선택하여 기재한 주요 과학활동실적 2개 중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실적 1개를 상대평가 하여 우수자 순으로 차등적 평가점수 부여

○ 학업계획(30점)

- 지원자의 성장과정 및 가치관, 학업계획 및 과학자로서의 진로 등 과학적 적성과 학업계획 구체성에 대해 평가 하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

□ 심층면접 평가기준

- 지원자의 과학활동실적 우수성,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 과학적 창의성 및 다양성, 과학적 표현력 및 토론능력, 인·적성 등에 대해 우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

※ 전인적 인재성장 계획서, 인·적성검사 결과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국내: 2018. 3. 7.(수) ~ 2018. 3. 21.(수) 24:00까지(온라인신청)
- 해외: 2018. 3. 7.(수) ~ 2018. 5. 11.(금) 24:00까지(온라인신청)
- 지역추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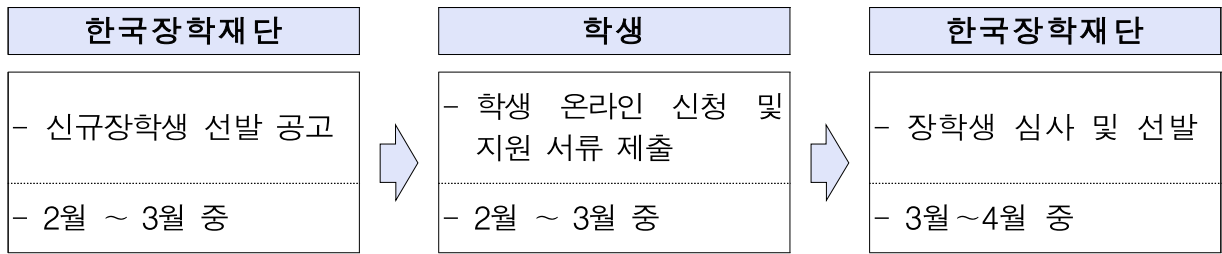
- 각 시·도 교육감 추천: 2018. 3. 7.(수) ~ 2018. 3. 30.(금)

- 추천학생 온라인 신청: 2018. 4. 6.(금) 24:00까지

※ 추천학생 온라인 신청은 각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자에 한해 반드시 신청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절차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 장학금 > 국가 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 신청하기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 지역추천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시·도에서 추천자 명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통보 후 신청가능하며 미 신청 및 면접 불참 시 탈락 처리됨

□ 제출서류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 작성 후 교육감/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후 온라인 제출[참고2 참조] ※ 교육감 추천서는 지역추천 유형만 해당하며 개별 제출이 아닌 교육청에서 제출함	PDF, JPEG
2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온라인 제출 (원본대조필 포함)	
3	과학활동실적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실적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참고2 참조] ※ 실적 증빙자료는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 ※ 실적 예시: 국내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과학관련 특별활동 참가 등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의 특기할만한 과학활동실적 기재 (증빙자료 첨부) ※ 연구 및 논문실적은 과학활동실적에서 제외	HWP, WORD
4	학업계획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참고2 참조] ※ 과학자로서의 진로설계 및 비전 등 기재	
5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 「전인적 인재성장 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참고2 참조] ※ 사회공헌 활동 및 계획 등을 기재하며, 증빙 가능한 자료는 증빙자료 제출	
6	기타 증빙서류	○ 과학활동실적서 상 주요 및 기타 과학활동실적 기재순으로 온라인 제출(원본대조필 포함)	PDF, JPEG

- ※ 원본대조필이 없는 서류는 제출로 인정하지 않음
- ※ 기타증빙서류 중 10p가 넘는 자료에 대해서는 맨 앞장과 맨 뒷장에 원본대조필 날인 (10p가 안 될 경우는 장마다 원본대조필 날인)

□ 유의사항

- 생활기록부 과목명과 입력하는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함
 - 단, 과목명 뒤의 아라비아숫자와 로마숫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
 - ※ 예시1) 생활기록부 과목명이 ‘고급화학 I’인 경우, 유사한 ‘화학’ 과목명 선택이 아닌 ‘고급화학 I’ 과목명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함.
 - ※ 예시2) “수학1” = “수학 I”은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
- 학기가 다르지만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한 학기에 1과목으로 처리
 - ※ 예시: 1학기에 ‘고급물리’가 2등급, 2학기에 ‘고급물리’가 3등급인 경우 → 성적총족 과목 수는 2과목으로 처리
- 입학예정대학 입력 기준
 - 국내장학생: 입학예정대학을 우선순위로 최대 3개까지 필히 기재
 - 해외장학생: 입학예정대학을 우선순위로 최대 5개까지 필히 기재
 - ※ 주의: 기재한 입학예정대학에 입학 하지 아니한 경우 선정 취소함
- 타 장학금 수혜자 지원 불가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 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 소속대학이 입학요강에 의거 해당 증서를 교부하였거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 되어 있는 경우 포함

5. 최종 선발 확정

□ 장학생 선발 예정자

- 장학생 선발 예정자는 심층면접 대상자 중 신청 분야별 1, 2단계 합산 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된 인원으로 함
- 장학생 중 유형별 20%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결원 발생 시 후보자 중에서 선발
 - ※ 단, 국내(일반) 유형의 경우 신청분야별로 20% 범위 내 후보자 선정

□ 장학생 최종 확정

○ 장학생 선발 예정자 제출서류 검토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장학생 선발 예정자 제출서류

· 국내장학생: 국내 대학 최종합격증명서

· 해외장학생: 해외 대학 최종합격증명서, 여권 및 비자(사본)

※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장학생 후보자가 서류 미제출 등으로 탈락할 경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발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1.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공통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8년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 체계 및 '18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국내장학생

○ 등록금 지원기준

- 성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학업장려비 지원기준

- 성적: 직전학기 평점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등록금 지원기준과 동일 적용)
- 사회봉사활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 활동
 - (대상) 계속지원 심사 시,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가 2,4,6회인 장학생
 - ※ '16년 선발된 국내장학생부터 적용
 - ※ 5년제 학과의 경우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 8회까지 대상임
 - (봉사활동 인정범위)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멘토링 프로그램) 등 참여, 자원봉사포털 (1365, VMS 등) 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 (봉사활동 실시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 하는 기간
 - ※ 계속지원 심사시점 기준 직전 2회 수혜기간으로 학기개시일(1학기: 3.1./ 2학기: 9.1.) 이전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 ※ 단, 계속지원 심사시점 이전 휴학 등에 해당하는 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도 인정
 - ※ 한국장학재단이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봉사활동 실시 예시('16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 1) '16-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17-1학기 재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2회)
 -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16.3.1.~2017.2.28.까지
 - '18-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2) '16-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17-1학기 복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1회)
 -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16.3.1.~2017.8.31.까지
 - '18-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17-1학기 제출대상X)
- 3) '16-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17-1학기 휴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2회)
 -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16.3.1.~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 복학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17-1학기 제출대상X)

- 사회봉사활동 시간 미충족 시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 해외장학생

- 성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 Pass/Fail 과목만 이수한 경우: 학기별 Pass/Fail 총 이수단위 중 80%를 Pass할 경우 지원

- Class I/Class II.1/Class II.2/Class III 유형 성적의 경우: Class II. 1(60점) 이상일 경우 지원
- 평균평점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대학별 성적체계에 따라 최상위학점 (A+ 또는 A)을 4.5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기타

- 계속지원기준은 성적취득년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 계속지원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지원가능횟수에 산정

2. 성적 관련 기준

□ 성적 산출 기준(2017-1학기 취득 성적부터 적용)

구분	유의사항
성적 (백분위 및 평균평점)	1) 직전학기: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 - 직전학기 평균 및 총평균 성적 산출 시 학칙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및 재수강 성적 포함 가능 - 단, 개인별 적용 및 일부 과목만 반영 불가(해당 계절학기 성적 전체 반영) 예시1) 학칙 상 계절학기를 포함하며, 계절학기 이수자가 A,B 인 경우 ☞ A,B 모두 계절학기 포함(A 또는 B만 포함 불가) 예시2) A 학생이 계절학기로 수강한 과목이 가, 나 과목 인 경우 ☞ 가, 나 과목 모두 포함(가 또는 나 과목만 포함 불가) 2) 평균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 3) 백분위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예시) 백분위점수 86.9점인 경우 86으로 처리(계속지원기준 미충족)
이수학점	1)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 -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2)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 산출

직전학기 성적산출 불가 시	<p>1)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학년 1학기)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학년 1학기) 본 성적 입력 -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 ※ 해당 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대학) <p>2)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예도 이수학점 및 성적취득 연도/학기는 해당학기로 입력 예시) '16-2학기에 전체 Pass/Non Pass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학점을 15학점 인정받은 경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16/2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적용 -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p>3)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하되, 성적취득연도학기에도 해당 학기를 명시 예시) '17-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직전학기('16-2학기 교환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 직전학기 성적: '16-1학기의 성적으로 입력,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16/1
-----------------------	--

3. 학적변동 등 조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반드시 통보
 - 국내장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통보
 - 소속대학은 재학 중 학적 변동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 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 해외장학생: 한국장학재단에 통보
 - 장학생은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 시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참고3]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복학 시에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으며 재단에 반드시 통보 요망

□ 전공변경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변경 가능
 - 대학 조치사항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 으로 입력
 -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단으로 통보
 - 해외장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참고3]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이공계 학과로 변경함을 증명하는 문서 첨부)
- 편입 등 소속 학교의 변경은 인정 불가
 -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로 선발된 장학생이 진급 시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등은 전공변경으로 취급하지 않음

□ 교환학생

-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단,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함 (단, 최소 이수학점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교환학생의 학적상태 입력 방법**

1) 교환학생으로 파견 된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예시) 2017년 2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2017-2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2) 교환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심사

- 직전학기가 “재학(교환)”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미보유 또는 산출 전 일 수 있으므로, 총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심사
- 단, 직전학기의 학사정보가 “재학(교환)” 상태여야 위의 심사 기준 적용 가능

예시) ('18-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17-2학기 교환학생으로, 해당 학기 성적이 산출 전 보유한 성적이 없어 '17-1학기의 성적을 입력

☞ ('17-2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학적상태: 재학(교환)였던 경우, 총평균성적 기준으로 '18-1학기 계속지원기준 심사

- 단, 교환학생 파견학기의 성적은 산출되지 않으나 이수학점은 산출된 경우, 교환학생 파견 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을 입력(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와 동일)

3) 주의사항

- 해외 파견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에 반드시 “재학(교환)”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점검 요청 (심사완료 후 수정 필요 시 공문 요청 필요)

※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내에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관련 산·학·연의 인턴십만 인정)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 으로 입력
- 2010년 2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부터 적용

□ 초과학기

- 해당학기에 학생의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 로 입력

□ 유급

- 유급(특정 연도/학기 성적을 전체 삭제 등)하고 해당 연도 또는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유급)” 으로 입력
- 단, 유급하여 다시 이수하는 학기에도 계속지원기준에 대해 심사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 미달 횟수에 포함함

※ 예시: 2016년에 2학년 이수 후 1년 유급하여 2017년에 2학년 전체를 다시 이수하는 경우, 2017-1,2학기를 모두 재학(유급)으로 업로드

□ 휴학

- 해당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또는 “창업휴학” 으로 입력

□ 자퇴·제적

-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탈락)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자퇴” 또는 “제적” 으로 입력
 - 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Pass/Fail 과목만 이수 등)할 경우 총 평균 성적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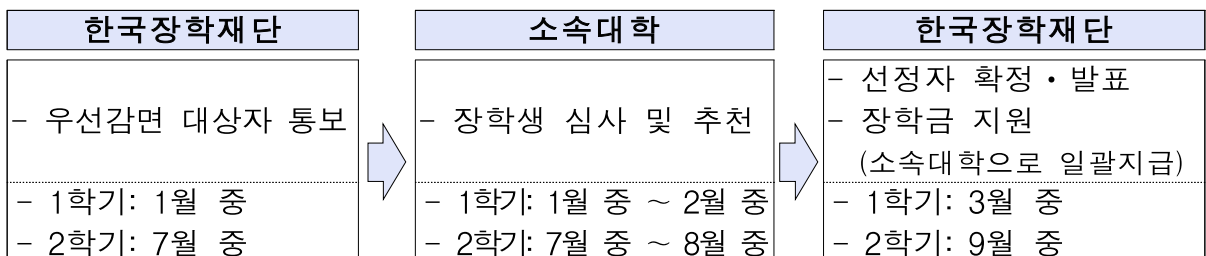
4. 장학금 지급 절차 및 방법

□ 국내장학생

- 지급절차: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지급(단, 지급횟수는 학기당 2회에 한함)
 - 장학금 확정 및 지급(재단) → 장학금 확인 및 지급(대학) → 장학금 수혜(학생)
 - ※ 대학은 학기당 마지막 회차(2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 ※ 별도의 학생 신청절차 없이 소속대학에서 진행
- 지급 및 처리방안
 - 등록금 우선감면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단, 우선감면 대상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전에 계속수혜대상으로 승인·확정된 학생에 한하여 실시
- 장학생의 등록금을 우선감면 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 상에 장학사업명을 명기
- 등록금 우선감면 제외
 - 장학생 선발·확정이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후 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 이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우선감면 제외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해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학생 본인 통장에 송금(장학금 지급 시 해당 장학사업명을 명기하여 송금 하고 계좌 송금 이외의 현금 지급 등은 불가)
 - 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금 상환(재단 내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상환)
- 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를 제공하는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가능
- 장학금 지급 시, 재단 내 대출금 및 장학금(예: 국가장학금 I 유형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처리 후 대학 지급
 - ※ 대출 및 장학금 상환/반환금, 대학 지급액은 재단의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등록금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계속장학생의 경우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계속장학생 대학 추천 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해외장학생

- 지급절차: 개인별 지급(본인 명의 계좌)
 - 장학금 신청(학생) → 계속지원기준 검토 및 지급(재단) → 장학금 수혜(학생)
- 지급 및 처리방안
 -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지정 시기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급
 -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신청서, 진도보고서, 성적표, 등록금 고지서
 - ※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진도보고서 서식은 [참고 3] 참조
 - 3학기제를 적용하는 해외대학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지급
 - 성적미달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진도보고서 및 성적표 필수 제출
 - 장학금은 현지 통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 신규장학생은 입학 학기에 한하여 국내 외화 계좌로 지급 가능
 - ※ 단, 불가피한 경우(해외계좌 미개설 등)에는 재단 내부 검토 후 원화 지급

□ 기타

-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전액 반환(이연불가)
 - ※ 단,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학에서 이연요청(공문 발송)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 가능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5. 장학금 중복지원 상세기준

□ 기본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중복지원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기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 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대통령과학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 분 및 학업장려비, 생활비에 한해서만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가능

6. 장학생 사후관리

□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 자격만 영구탈락 되는 경우

- ①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 계속장학생 중 타 장학금 수혜 승인자*의 경우에도 동일 지원 기준 적용
 - * 10년 선발된 명예장학생에만 해당
- ② 편입 등 소속학교 변경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 캠퍼스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간 이동은 인정 불가

○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반환
-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④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⑦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V

기 타

1. 장학증서 및 수혜증명서 발급

- '18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신규 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최초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2.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개요: 대통령과학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11.6월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환수대상: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의무 종사 기간 동안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는 자
 - ※ '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부터 해당

- 수학중단: 자퇴 및 제적 등 수학중단(단, 질병, 상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의무종사: 대통령과학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야 함

- 의무종사일 산정

$$\text{총 의무종사 기간} = \text{연구장려금 지급횟수} \times 6(\text{개월}) \times 30(\text{일})$$

※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

-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 규정 별첨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 ※ 단, 비 이공계 분야 대학(원)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예정 확인서 제출)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 입대, 교정 시설 수감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종사 중지가 가능
 - ※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학금 환수

- 이공계 전공

-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	---------------------------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left(\begin{array}{c} \text{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 \text{지급한 연구장려금} \end{array} - \begin{array}{c} \text{지급한 장학금 중} \\ \text{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남은 의무종사일}^*}{\text{총 의무종사일}}$
--

*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기간 - 실제 의무종사기간

- 환수방법: 환수 대상자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 약정서 제출

- 일시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함
- 분할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가능
 - ※ 90일 이상 미상환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환수자 지정
 - ※ 약정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 변경 가능

- 상환유예: 환수대상자가 아래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 진로 설정 및 유지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장학생은 졸업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 해외장학생은 졸업 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필수 제출
-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

4. 대학 현장 모니터링

- 대학 모니터링: 재단에서 대학을 선정하여 시행
- 점검 내용
 - 장학생 선발 점검: 신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유무 및 준수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 여부 등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 장학 상품명) 등

-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점검 후 조치사항

- 실태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도출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 하고 해당 대학은 매회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감독 실시

5. 대학 의무사항

- 대학은 장학생 추천·지급·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계약학과 장학생 관련 정보 또한 재단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대학은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로 보고하고, 장학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협조

6. 기타사항

- 동 지원·관리지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원·관리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봄

문의 및 응답

- 주소: (41200) 대구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6층 우수장학부
 ‘대통령과학장학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1599-2290(대표전화)
-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 고객상담 → ‘대통령과학장학금’

VI

2018년도 추진일정

1. 신규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공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장학재단	'18. 2월~3월 중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으로 개별신청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역추천자의 경우, 시·도교육감 추천 된 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18.4.6.(금) 24:00까지) 	신청 학생	(국내) '18.3.7.(수)~3.21. (수)24:00까지 (해외) '18.3.7.(수)~5.11. (금)24:00까지
1단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준비 및 진행 (국내 및 해외) ※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인·적성 검사 실시 	한국장학재단 심사위원	(국내) '18. 4월 중 (해외) '18.5~6월 중
2단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접 (국내 및 해외) 	한국장학재단 심사위원	(국내) '18. 4월 중 (해외) '18.5~6월 중
최종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선발 (국내 및 해외) 	한국장학재단	(국내) '18. 4월 중 (해외) '18. 6월 중
선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통보 (신청자 개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장학재단	(국내) '18. 4월 중 (해외) '18. 6월 중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급(학기별)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국내) '18. 5월 중 (해외) '18. 8월 중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계속장학생 지원

			1학기	2학기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장학생 신청안내(학생·대학)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장학재단	'18. 1월~2월	'18. 7월 중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한국장학재단	'18. 1월~2월	'18. 7월 중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및 학적 확인 대학 추천 	소속대학	'18. 1월~2월	'18. 7월~8월
우선감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소속대학	'18. 1월~2월	'18. 7월~8월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18. 2월 중	'18. 7월~8월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18. 2월~3월	'18. 8월~9월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별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추가지급 신청 및 반납 학적 변동 등 최종 지급 결과보고 제출 	소속대학	'18. 8월 중	'18. 11월 중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참고1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 '18년
등록금	3.0이상/ 4.5만점 또는 2.7이상/ 4.3만점	국내장학생	국내장학생		국내장학생	국내장학생
		3.25이상/4.5 만점 또는 3.0이상/4.3 만점	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		B ⁺ 수준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B ⁺ 또는 82.5점 이상	B ⁺ 또는 85점 이상	3.5이상/4.5 만점, 3.3이상/4.3 만점 또는 3.0이상/4.0 만점	B ⁺ 수준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3.0이상/4.0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3.0이상/4.0만점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4.0이상/5.0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 없음				*국내장학생의 경우,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최소 3학점 이상적용) *'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		
학업 장려비	해당 없음	직전학기 성적A ⁰ 이상 ('09년 1학기 성적)	4.0이상/4.5 만점 또는 3.7이상/4.3 만점	A ⁰ 수준,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0점 이상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 '09년부터 국내장학생에 한하여 학업장려비 지원 제도 신설 (단, '09년 선발 장학생 이후에만 적용) * 입학학기는 전원 지급, 2학기부터는 계속지원기준 충족자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 의무 이행 해야 하며, 미 충족시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 '16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 없음		*국내장학생의 경우,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				
생활비	* '09년도 신규장학생부터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해서 생활비 지원					
교재비	* '08년도 교재비 지급제도 신설하여 '09년 1학기까지 기존장학생에 한하여 시행 후 폐지 * 교재비 지급기준 - 국내장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 해외장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균 A이상(90점 이상)					

※ 성적적용 시점

- '07년도 성적기준은 '07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8년도 성적기준은 '08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9년도 성적기준은 '09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0년도 성적기준은 '10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1년도 성적기준은 '11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2년 ~ '18년도 성적기준은 '12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참고2

신규장학생 지원 서류(서식)

<서식 1>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소			
소속고등학교 (소재지)		진학예정대학 (1순위)	

상기 신청인은 0000년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 입학 예정
 (허가)자로서 창의적이고 과학기술분야에 잠재력이 풍부하여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소속:

직위:

추천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 성명 (직인 또는 서명)*

한국장학재단 귀중

<서식 2>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실적서

1. 주요 과학활동실적

- ※ 가장 중요한 실적 2건 이내 작성
- ※ 과학활동실적(예시): 수상실적(경진대회, 경시대회, 발표회, 공모전, 전시회 등), 기타(방과 후 활동, 과학활동 관련 캠프, 페스티벌,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등)

실적유형	수상 / 기타 중 선택 기재	실적분야	(작성요령 참고하여 1개 분야만 선택 기재)
실적명			

<작성요령>

- ※ 아래 항목에 따라 **총 5장 이내로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기술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실적증빙자료는 별도제출이며, 페이지 제한 없음)
- ※ 실적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가장 연관된 분야로 1개만 선택
- ※ 연구 및 논문실적은 과학활동실적에서 제외
- ※ 작성 시 파란색 설명글은 삭제요망

실적의 창의성(독창성)

< 실적의 아이디어 창의성 및 독창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실적의 주요 내용

< 실적 방법 및 내용 등 실적의 우수성이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

<작성요령>

○ 「수상」 실적의 경우: 아래 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수상연월일	참가자			대회명	수상명	국내외 구분	수준
	단독/공동 여부	본인역할	팀원수				
년 월 일		(리더/팀원 등)	(단독일 경우 미기재)				

※ 수상명: 대통령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 수준: 대회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대회 규모(전체 참가자 수 등), 예선 및 본선 여부,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액수 반드시 기재)

□ 실적의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실적의 향후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성

<본인의 전공과의 연계성, 향후 진로와의 연계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참여도 및 기여도

<실적의 참여인원수, 실적 산출과정에서의 참여도, 역할, 기여도 등을 자유롭게 기재 >
(예시) 수상의 경우: 팀원 총 7명중 리더를 맡아 대표로 발표(presentation)를 하였음.

□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

2. 기타 과학활동실적

※ 작성요령 (작성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중요도 순에 따라 **5개 이내로 기재**

일련 번호	구분 (교내/교외)	실적명 (간략한 실적내용 기재)	활동일(기간)	주관기관	비고
1					
2					
3					
4					
5					

<첨부> 실적증빙자료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주요(2건 이내) 및 기타 과학활동실적 기재 순으로 증빙자료 첨부
- 주요 과학활동실적의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
 - ※ 본인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사본은 인정 안 됨, 반드시 공식적으로 발간된 것만 인정
 - *예: 수상의 경우 상장 사본, 수상관련 증빙내역(대회 공고문, 대회로 제출된 조사자료, 발표자료 등) 순으로 제출
 - ※ 수여기관의 원본대조필 필요, 원본대조필이 불가능할 경우 증빙할만한 자료제출(수상사진, 해당기관 발행 증빙 문서 및 이메일 등)
- 기타 과학활동실적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실적의 성격상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 기재 요망(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실적 증빙자료는 하나의 파일로 온라인 신청 시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과장·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성명: (인)

<서식 3>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서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학업계획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1. 성장 과정 및 가치관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진로 및 분야 등 중요한 결정 내용과 결정을 하게 된 동기와 계기
- 신청자의 인생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2. 대학에서의 학업계획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본인의 관심분야, 목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과학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 년 월 일

성명: (인)

<서식 4>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계획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 작성 시, 내용에 본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 이름 등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위원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람
 (예) 00고등학교, 00대학교, 000총장, 000학교장, 000교수 등
 ※ 제출한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는 장학생 선발·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1.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

- ※ 학생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시오.
 - 해당 활동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기술

2. 대학 생활 중 사회공헌 등 활동 계획

-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 받은 후, 체득한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자세히 기술하시오.
 - 대학 재학 중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추진 및 실행계획을 자세히 기술하여 사회 공헌 및 기여에 대한 의지 표명. 예) 사회봉사, 기부 등

3. 사회 기여·환원 계획

- ※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하시오
 - 생애 전반에 걸쳐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 기여 및 환원 대한 계획을 기술하시오.(본인의 전공(예정)분야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함)

20 년 월 일

성명: (인)

참고3

계속장학생 관련 서식 자료

<서식 1>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지급신청서

선정연도	20 년도 (제 회)	장학생 구분	해외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년
주소(대학교)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주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현지 및 국내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 이메일: (현재 사용중인 이메일로 반드시 기재)		
지급계좌 ※ 현지통화 지급신청 시 별지 추가 작성	은행명 (지점명 포함):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본인계좌 지급 원칙)		
- 대학 등록 기한: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와 같이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div>			
<p>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 첨부서류 1. 성적표 원본 1부 2. 진도보고서 1부 (서식2 참조) 3. 등록금 고지서 1부 4. 항공권 구입 영수증(e-ticket 등) 1부 (신규 해외장학생만 해당)			

※ 본 신청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별도의 신청단계 없음

< 현지통화 지급 신청 시 현지 지급계좌 정보 >

※ 모든 정보는 영문으로 작성

1. 수취인 거래은행 정보

- 은행명(Bank Name):
- 은행 Code(SWIFT, ABA 등):
 - 예) 미국 → ABA No: FW + 9 자리 숫자로 구성
 - 영국 → IBAN Code: GB + 20 자리로 구성
 - 캐나다 → CPA No: CC + 9 자리 숫자로 구성
- 은행주소: 최소한 도시명, 주명, 국가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수취인계좌번호:

2. 수취인 관련 정보

- 수취인 성명:
- 수취인 여권번호(Passport No.):
- 수취인 주소(현지 주소):

<서식 2>

20 년도 학기 진도보고서

선정연도	20 년도 (제 0회)	장학생 구분	해외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년
연락처(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 해외 현지주소 및 연락처도 추가하여 작성		
(학위과정 중 해당학기 추진된 학업내용,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 - 3 Page 내의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제외함.

※ 학기말 학업성적표 첨부

<서식 3>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선정연도	20 년도 (제 0회)	장학생 구분	해외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년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 해외 현지주소 및 연락처도 추가하여 작성		
변경사항 개요			
휴학	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 유		
교환	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 유		
전공 변경	내 용	당 초	변 경
	사 유		
본인은 상기와 같이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h3>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h3>			
※ 첨부서류: 소속 학교 재적증명서(휴학 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 각 1부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제외함.

<서식 4>

대통령과학장학생 종료보고서

선정연도	20 년도(제 0회)	장학생 구분	해외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학 위 기 간	20 . . ~ 20 . .		
졸업논문명			
소속기관(졸업 후)	[기관명]	[부서(과)명]	
장래계획(최소 5년간)	·학위 취득 - 국내 <input type="checkbox"/> , 유학 <input type="checkbox"/> - 석사 <input type="checkbox"/> , 박사 <input type="checkbox"/> , 박사후과정 <input type="checkbox"/> - 전공 분야: ·취업 - 기업명() 취업분야()		
연락처	·학교(근무처): ·숙소(주택): ·E-mail:		
※ 향후 자세한 진로 계획 및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술 (필요시 별지 사용)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제외함.

※ 대학 졸업증명서 및 학업성적증명서 첨부

<서식 5>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포기 확인서

선정연도	0000년도	장학생 구분	국내장학생(), 해외장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i>(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i>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번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포기 사유				
포기연도/ 학기				
본인은 상기 사유로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지원을 포기합니다. 이후 장학금 포기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4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p>보유이용 기간</p>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 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 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p>
<p>수집·이용 동의여부</p>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 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p>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p>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 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p>	
<p>제공·조회 대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 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 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 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희망사다리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p>제공·조회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p>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

	<p>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용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 <p>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제공·조회 동의 여부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p> <p align="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p> <p align="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align="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align="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서명 또는 인)

참고5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국가장학금(재단 장학금 포함)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 쏘 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신청불가)로서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4. 본인은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가장학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대통령과학장학금
 - 가. 본인은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 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각종 보고서(진도보고서, 종료보고서 등)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다. 본인은 재단의 지식봉사멘토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성적, 이수학점, 초과학기, 학적·등록(상태), 제한대학, 특별추천, 소득구간(분위), 연령, 대출제한, 해당학과 등) 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4.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본인의 부모로부터 받는 부모 소속기관의 등록금지원을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에 따라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군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 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5.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국가우수장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 가입 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이공계지역대, 인문사회계)으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고객관리·홍보 등의 서비스 수혜를 위해 국가우수장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7. 연구장려금 환수 등에 대한 동의(2012년부터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신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및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장려금의 중지·환수 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

내용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8. 이공계열 진로 설정 및 유지에 대한 서약

이공계열 진로 설정 및 유지 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에 지원하며 장학생으로 선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졸업 후 이공계열 진로를 설정하고 유지하겠습니다.
2. 졸업 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 및 의무종사보고 등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등에 의거 한국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하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9.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팝업창]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 ① 직전학기 성적이 미달인 경우 1회 중단, 누적 2회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 ※ 계속장학생 중 타 장학금 수혜 승인자*의 경우에도 동일 지원 기준 적용
 - * 10년 선발된 명예장학생에만 해당
- ②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 ※ 캠퍼스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간 이동은 인정 불가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확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④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⑦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0.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①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확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②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③ 장학금을 받은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2012년도 선정 장학생부터 적용)
 - 장학금 환수
 - ※ 환수액 산정: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장학금) × (남은 의무종사기간/총의무종사기간)
 - ※ 의무종사기간: 수급자가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
 -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12년 선정 장학생부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장학생은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야 하며 재단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text{총 의무종사기간} = \text{장학금 지급횟수} \times 6(\text{개월}) \times 30(\text{일})$$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 ①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장학생
 -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 교육계열 중中等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②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장학생

장학생은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환 약정서를 제출하고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여야 함

- ① 일시상환: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 ② 분할상환: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 90일 이상 미상환 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 환수자 지정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①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②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③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④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